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11342]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21.06.08]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5.06.17]	이메일 ifsmile@daum.net
---	--	-------------------------



정 보 공 개 서

「 망고트리 」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망고트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411, 3층 (망고트리)]

[전화 :  (비공개)]

[팩스 : 050-4230-059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비공개)]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망고트리	제일교동짬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411, 3층 (망고트리)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8. 11. 01	김정기	 (비공개)	050-4230-0599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298-51-0030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제일교동짬뽕]라고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제일교동짬뽕	
상 호	제일교동짬뽕 ○○○ 점	
상표(서비스표)	한글 : 제일교동짬뽕	

상 표		등록번호 : 40-1875920-0000 등록일자 : 2022.06.08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241,740	-	-
2023년	-	-	-	187,247	-	-
2024년	-	-	-	157,245	-	-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 명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김정기	대 표	2018. 11. 01 ~ 현재	대표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2024년 12월 31일	상근	비상근	0
	1	-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직원이 없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이름/상호	구 분	기 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망고트리	가맹사업경영	2019. 12 ~ 2022. 04	돈카츠프라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 당사의 돈카츠프라이는 2022년 4월에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가맹점 운영권 내에서 사용	등록일자 : 2022.06.08	등록번호 : 40-1875920-0000	김정기	존속기간:2032.06.08 (허용기간): 가맹사업 종료 시까지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적재산권의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제일교동짬뽕]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체결 사실이 없습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 없음)

2. [제일교동짬뽕]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망고트리	제일교동짬뽕	김정기	가맹사업예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411, 3층 (망고트리)

3. [제일교동짬뽕] 업종

영업표지	업종	
제일교동짬뽕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짬뽕, 짜장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제일교동짬뽕]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년도 말			2023년도 말			2024년도 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당사의 제일교동짬뽕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5. 최근 3년간 [제일교동짬뽕]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22년	-	-	-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6. [제일교동짬뽕]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망고트리	돈카츠프라이	20191215	외식	1/0	-	-

☞ 당사의 돈카츠프라이는 2022년 4월에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의 제일교동짬뽕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8. [제일교동짬뽕]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4년	-	-

☞ 당사의 제일교동짬뽕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없음 : 작년 말 가맹지역본부 및 가맹지역사무소 현황은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25,960	 (비공	-	
광고 및 판촉	소계		25,960	 (비공	-	

11. 가맹금 예치 00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신도림 지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02-2068-0243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국민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망고트리에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국민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개설시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인터넷을 통해 예치 시]

1.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상단의 "기업메뉴 클릭"
2. 상단의 "기업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3. 기업서비스 카테고리에서 "가맹금예치제도" 클릭
4. 가맹금예치제도 카테고리에서 "가맹점사업자" 클릭
5. "가맹금예치금예치" 클릭
6. 공인인증서 로그인
7. 약관에 동의 클릭
8. 가맹본부사업자번호에 "298-51-00308" 기재하고 "가맹본부조회" 클릭
9. 가맹본부명에 "김정기(망고트리)" 확인되면 선택 클릭
10. 가맹금예치금액 입력, 출금계좌 선택, 비밀번호 입력, 가맹계약체결일 입력 후, 하단 예치금예치 클릭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별도로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 해당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 해당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 해당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제일교동짬뽕]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귀하와 협의한 별도 구입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예외조건)
가맹비	5,5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은행 예치	반환 안됨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서 개점 이후 반환되지 않음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서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 처리 후 반환
교육비	3,3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은행 예치	교육 후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로 소요	개점 전 교육 미이수 시 반환

- ▶ 개점 전 현장교육에 대하여 1인 이외에 추가 인원의 교육을 원할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추가 1인당 하루 33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점 전 현장교육 종료 시 귀하의 수준이 당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1인당 하루 33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10,000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가맹금 및 물품대금의 미지급,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액 담보	계약종료 및 해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 로 잔존채무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잔액을 상환

▶ 보증금은 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18,800
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10,000(부가세 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4]쪽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평 기준)(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지정업체 or 점주개별업체	39,600	1,980	가맹계약 시 업체와 개별계약	[제작/시공 후 반환안됨] 설치 전 공사/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20평
간판/사인물		5,000				3.5m 기준
설비/기기		16,000				
초도식자재	지정업체 (미지정)	5,000		주문 즉시		
원·부자재/ 집기	본사 or 지정업체(미지정)	6,000				

총계	-	71,600	3,580	-	-	-
----	---	--------	-------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특정된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귀하의 매장에 대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선택사항/추가공사 및 점포/건물에 따른 간판/외부파사드/주방방수공사/냉난방기/철거/가스설비및공사/후드공사/전기승압/통신설비/소방시설/화장실공사/외부상하수도공사/어닝/외장공사/인허가/온수기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서 설비/기기 및 원부자재/집기 비용은 점포규모/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표의 금액 중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을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 3.3㎡ 당 ₩ 550,000의 (부가세 포함) 감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인테리어/간판/사인물에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로고 등 이미지의 규격, 재질 및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이 브랜드의 통일성에 따라 적정한 품질로 완성되었는지 등을 검수하며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의 내용물이나 하자에 대한 검수는 하지 않습니다.
- ▶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당사의 실사와 검토를 통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그 상태를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제일교동짬뽕』 가맹사업의 통일성·품질 유지를 위하여 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도면과 다를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지는 귀하의 책임하에 선정하며 당사는 선정과정에서 해당지역 행정구역 상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 일정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전화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당사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만 19세 이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종업원	당사 및 가맹점 사업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만 19세 이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제일교동잠뽕]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최초 가맹금의 납부 방법

- ☞ 영업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해당 항목별 기한 내에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홍보분담금에 대한 세 부기준은 [V- 9 -1]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330	매월 1일 (선입금)	반환안됨	영업표지사용 브랜드노하우 등의 대가	CMS자동이체

홍보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반환안됨	홍보비로 소요	-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기획비용 부담 가맹점사업자-판촉물의 제작비용 및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 부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반환안됨	판촉비로 소요	-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미지정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Ⅶ.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해당없음		
POS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단위: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해당없음 : 당사의 제일교동짬뽕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점포운영	위생상태 및 점포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시	문의: 본사  (비공개)
재고관리	공급품의 보관상태 점검	필요 시	문의: 본사  (비공개)
회계처리 (회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필요 시	문의: 본사  (비공개)

- ▶ 당사는 필요 시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가 제시한 관리기준에 의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사항 점검이나 기타 재고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가맹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갱신에 의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른 계약조건은 갱신 당시의 신규가맹계약서에 준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하거나 원할 경우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금에서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가맹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에서 최초의 계약기간 중 잔여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갱신 된 경우에는 반환되는 가맹금은 없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귀하는 새로운 대체수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가)의 경우에 준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된 경우에는 반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제일교동짬뽕]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교육비 ·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7 -2)]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당사와 귀하 사이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점 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철거하지 못하며 지원 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원 받은 품목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귀하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계약서, 매뉴얼 등) 반환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시스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당사에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상호 협의하여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결 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는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당사의 소유이며, 귀하는 이를 삭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사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계된 서류를 (계약서, 매뉴얼 등) 계약종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계약종료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1일 당 금 삼십만원씩 (₩300,000)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니,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계약

의 종료와 그 조치조항과 위약벌 조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제일교동짬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해당없음 : 당사의 제일교동짬뽕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제일교동짬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제일교동짬뽕]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당사가 [제일교동짬뽕]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아래> 3)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제한 중 <상품명>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물품중단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간판철거와 계약해지	문의: 본사  (비공개)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필요한 경우 경영방침에 따라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추가 적으로 상품·용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혹은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및 판매 금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물품중단
경쟁업체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간판철거와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에 기재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추후 제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권장가격 (단위: 원)	상품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제일교동짬뽕	8,400	수제찹쌀탕수육(미니) or 꺾바로우	8,900	변동 시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 카톡, 유선전화, 기타 통신수단으로 공지	
알짬뽕	12,900	수제찹쌀탕수육(소) or 꺾바로우	13,900		
홍합왕짬뽕	11,900	수제찹쌀탕수육(대) or 꺾바로우	20,900		
소고기왕짬뽕	12,900	칠리간쇼	16,900		
짬뽕탕	16,800	크림간쇼	16,900		
옛날짜장	6,400	지삼선	14,900		
볶음밥	6,900	군만두	5,500		
		기타 음료	-		
		기타 주류	-		

[귀하가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신규 계약을 통해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짬뽕 또는 짜장을 판매하는 사업	제일교동짬뽕	-

▶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일교동짬뽕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이 필요한 경우 당사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신규 계약을 통해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지름 1km) 이내 (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별지도면 첨부)

▶ 특수상권은 귀하의 영업지역기준 반경 이내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특수상권에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합니다.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 역사, 지하상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관공서, 호텔, 리조트, 영화관, 대학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제일교동짬뽕]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제일교동짬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년	-	-	-	-

☞ 해당없음 : 당사의 제일교동짬뽕은 가맹점/직영점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년	-	-

☞ 해당없음 : 당사의 제일교동짬뽕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제일교동짬뽕]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 2항 각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6조 2항 각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6조 2항 각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2항 각호
○ 당사의 가맹사업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2항 각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조 2항 각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의 표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	31조 1항 각호
○ 사용을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31조 1항 각호
○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31조 1항 각호
○ 초기가맹금, 로열티 등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31조 1항 각호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31조 1항 각호
○ [경업금지 및 사업장 내 겸업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31조 1항 각호
○ [감독 및 시정 요구권 등] 규정에 의한 당사의 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31조 1항 각호
○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31조 1항 각호

를 저해할 경우	
○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5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1조 1항 각호
○ [공급품 등의 조달과 관리] 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상품을 본인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31조 1항 각호
○ 자점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31조 1항 각호
○ 복장 규정 및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1조 1항 각호
○ 귀하가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가맹점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31조 1항 각호
○ 회계자료 통지 및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1조 1항 각호
○ [홍보 및 판촉] 1항의 규정에 의한 팜플렛, 리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으로 브랜드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1조 1항 각호
○ 홍보 및 판촉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31조 1항 각호
○ 당사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1조 1항 각호
○ 기타 본 계약의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1조 1항 각호
○ 귀하의 귀책사유로 초기가맹금을 내지 못하거나 개점승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귀하가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31조 1항 각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귀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가 귀하의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 당사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조 3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1조 3항 각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31조 3항 각호

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1조4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1조 4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1조 4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1조 4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1조 4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1조 4항 각호

만일 귀하의 사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1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계약서 제40조)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양당사자 사이의 서면합의, 경영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귀하에게 사전통보한 후에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본사  (비공개)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리행사 시킬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가맹 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의 사후통지 및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당사에	교육비 지급 및 교육수료

			통지 → 요건 검토 → 승인통지(통지받은 후 1개월 이내)	
업무위탁	불가	-		
대리행사	불가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 존속 또는 계약종료 후 1년 동안은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당사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동종의 가맹사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명의로 변경 후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종사할 경우에도 해당)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제일교동짬뽕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짬뽕 또는 짜장을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여부통지 → 완료	문의: 본사  (비공개)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1:00	주 6일	문의: 본사  (비공개)

▶ 귀하가 불가피하게 휴업해야 할 경우 그 사유를 당사에 휴업하기 3일 전까지 요청하여 고객의 불필요한 클레임에 당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유가 정

당할 경우 당사는 승인할 수 있습니다.

- ▶ 나아가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자율	직접 근무	당사로부터 승인 받은 자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필요 시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을 통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위생상태, 회계 관리 등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	담당자 매장 방문→관리내역 점검→일지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서명 혹은 통지	필요 시	본사	

- ▶ 당사는 필요 시 귀하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가 제시한 관리기준에 의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사항 점검이나 기타 재고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가맹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당사가 필요 시 소집하는 가맹점사업자 회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가맹점운영에 관하여 건실한 자금관리 관행을 가져야 하며, 당사가 요구할 시 정확

한 판매현황 등을 당사가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홍 보	브랜드 홍보 상품 홍보	홍보비의 50%	홍보비의 50%	홍보계획→ 가 맹점 통보 → 비용 입금→홍 보시행	
	상품홍보+가맹점 모집 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공동판촉활동	기획비용 부담	판촉물의 제작비용 및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 부담	판촉계획→ 가 맹점 통보 → 비용 입금→판 촉시행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홍보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홍보 및 판촉을 할 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가 위와 같이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전국 규모 혹은 자신이 속한 지역규모의 홍보 및 판촉활동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기로 합니다. 다만 판촉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와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브랜드 홍보 및 상품 홍보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홍보·판촉 활동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가맹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홍보 및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 홍보 및 판촉을 위한 팜플렛, 리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제일교동짬뽕]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제일교동짬뽕]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제조법 및 경영노하우와 공급처 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귀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제32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18조(경업금지 및 사업장 내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귀하가 계약서 제8조, 제9조, 제16조 또는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당사에 위반 행위별로 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서 제22조[공급품 등의 조달과 관리] 1항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23조[자점매입] 1항 1

호 내지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귀하가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당사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 또는 폐점조치 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금 2,0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당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할인 또는 면제하였거나 무상으로 귀하에게 물품을 지원한 경우에 귀하는 당사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거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할인 또는 면제한 금전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본 조에 의한 위약금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나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0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2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2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4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3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0	
간판/기기·집기 외/초도 상품 공급	- 외장, 간판 등 필수 시설물 설치 및 공사	D-10	
신규교육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6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특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계약이행, 표준화, 시장조사, 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특별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 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 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 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제일교동짬뽕]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제일교동짬뽕]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제일교동짬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소개, 메뉴조리방법, 점포운영의 노하우, 고객응대 서비스교육 등	실습교육 현장교육	오픈 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 당사는 교육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제일교동짬뽕]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일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 당사는 교육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시교육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원하여 다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비·숙박비·교통비 등 제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신규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중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2			
3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비공개)**)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 원·부재료·설비·집기 리스트

(변동 시 별도 공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2024년 ~ 2022년 재무현황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망고트리	영업표지	제일교동짬뽕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망고트리 대표 김 정 기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망고트리	영업표지	제일교동짬뽕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망고트리 대표 김 정 기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